

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 (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) 안전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

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-0078호 (2021. 03. 11.)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방한용, 패션용, 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를 추가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행정예고 하였다.

■ 적용범위

- 일상생활에서 방한용, 패션용 및 스포츠용으로 착용하는 마스크(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,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섬유, 합성수지, 가죽 또는 모피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(일회용 마스크를 포함))
- 제외대상 : 식품의약품안전처 「약사법」 및 고용노동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타법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

■ 의무사항

-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유해물질에 대한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·검사 기관, 외국의 시험성적서,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따랐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■ 유해물질 시험항목

유해물질명		적용 대상
폼알데하이드		섬유(부직포 포함)
아릴아민		염색한섬유(부직포 포함)
pH		섬유(부직포 포함)
형광증백제		섬유(부직포 포함)
유기주석화합물 (TBT, Tributyltin)		섬유(부직포 포함)원단및 가죽재질 위 코팅, 프린팅
알러지성 염료		염색한 폴리에스터, 나일론, 아크릴, 아세테이트, 트리아세테이트, 염화비닐 섬유(부직포 포함)
다이메틸푸마레이트		가죽, 모피
유해원소 함유량	총납 총 카드뮴	금속 기질, 고분자기질, 페인팅 및 유사코팅, 기타 재료(목재 등)
프탈레이트계 가소제	DEHP	섬유 원단(부직포 포함)에 합성수지(합성고무포 함) 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(합성고무포함) 소재의 부자재
	DBP	
	BBP	
디메틸포름아미드(DMF)		부직포 및 폴리우레탄 등으로 구성된 안감, 중간 층, 겉감에 대해 제조공정 중에 유기용제를 사용 한 경우
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		